



정년보장교원 임용규칙

규정번호	3-2-4
제정일자	2008.06.16
개정일자	2013.06.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8

제정	2008년	6월	16일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12년	2월	13일
개정	2012년	4월	30일
개정	2013년	6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제3조에 의거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교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이하 “임용대상자” 라 한다)은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본 대학의 교원으로 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전임교원임용규칙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른다.

제3조(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 ①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의 수는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

② 총장은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일 2월전 까지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제4조(정년보장교원 임용기준) ① 임용대상자는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임용대상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질적 심사와 정성적 심사를 통하여 실적의 우수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현 직급 재직 기간 중 매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의 등위백분율 평균이 상위 50% 이내<개정 2012.2.13>

2. 학부(과) 정년보장 종합평가표에서 찬성 의견서 취득

3.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회지급 이상의 우수학술지에 책임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 하거나 대학(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1억원 이상의 연구과제를 과제 책임자로 수탁 <개정 2012.2.13>

4. 임용대상자의 실적평가 세부 기준에 의한 평가부문별 인정점수의 합계(단, 각 평가부문별 최대 인정점수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점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가 750점 이상 득점<개정 2012.2.13>

② 총장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임용대상자에 대해서 제1항제4호의 인정점수에 추가하여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으로 전임교원임용규칙 제27조제2항이 규정하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절차) 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정년보장교원의 임용 제청) ① 당해 연도에 임용 제청하는 정년보장교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만족하는 임용대상자의 수가 제3조가 규정하는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을 충족하는 교원 가운데 실적평가 점수, 대학발전 기여도 및 교수활동 등을 고려하여 임용 제청한다.<개정 2012.2.13>

제7조(제출서류)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원하는 임용대상자는 전임교원임용규칙 제29조가 규정하는 교수 승진을 위한 제출서류를 승진임용일 4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① 제4조 제1항 제2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사안 종결 시 자동 해체된다.

2.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부(과)장(본인이 피심사자인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전임교원이 9인 미만인 학부(과)는 피심사자를 제외한 전임교원 전원으로 학부(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를 위한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의 승진임용 평가를 위하여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위원별로 기획처에 제출한다.

2. 기획처는 위원별 평가서류를 수합하여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3.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가 임용신청자의 정년보장 임용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찬성/반대에 대한 학부(과)의 의견을 정해야 하며 [별표4]학부(과) 정년보장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과 본 대학 교원 인사규정, 본 대학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한 교원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보장교원 임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2012학년도 정년보장교원 임용까지의 실적평가 세부 기준에 의한 평가부문별 인정점수의 합계(단, 각 평가부문별 최대 인정점수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점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계 750점 이상 득점
2. 비공업계 650점 이상 득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 절차

순번	절차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1	정년보장교원 임용 신청	전임교원임용규칙 제25조가 규정하는 교수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에 따른다.		
2	학부(과) 인사위원회 구성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는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처	승진임용예정일 4월 전까지 위촉
3	학부(과) 평가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3]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위원별로 기획처에 제출한다.	기획처, 학부(과) 정년보장 인사위원회	
4	학부(과) 평가 결과 전달	기획처는 위원별 평가서류를 수합하여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기획처	
5	학부(과) 평가 결과 처리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가 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자의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찬성/반대에 대한 학부(과)의 의견을 정해야 하며 [별표4] 학부(과) 정년보장 종합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기획처, 학부(과) 정년보장 인사위원회	
6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평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자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별표2]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한다.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승진임용예정일 2월 전까지 평가
7	총장 심의 요청	전임교원임용규칙 제25조가 규정하는 교수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에 따른다.	총장	
8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교수 승진(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자에 대한 평가자료와 대학에서의 제반 활동 등을 참작하여 무기명 표결에 의하여 교수 승진(정년보장교원)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교원인사위원회	
9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청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기획처	

[별표3]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피심사대상 교수의 소속	현 직급	성 명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 회의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며 학부(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학과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주변과 잘 화합하고 있다. - 대외 활동이 활발하여 학부(과) 또는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수업이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평이 좋다. - 건강 문제로 교수활동에 지장을 준 적이 없다. 			
평가 결과	정년보장교원 임용 찬반 의견			
	임용 찬성		임용 반대	
	[종합 의견]			

※ 학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작성방법 및 결과활용

- 1) 표의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자에 대한 ‘임용 찬성’ 또는 ‘임용 반대’ ‘난에 ○표로 기재하십시오.
- 2) 종합의견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3) 학부(과) 평가 결과는 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 시 찬반 의견만 반영됩니다.
- 4) 학부(과) 정년보장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임용 찬성’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학부(과)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자의 정년보장교원임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5) 학부(과) 정년보장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임용 찬성’ 의견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과) 정년보장평가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임용 찬성’ 또는 ‘임용 반대’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 6) 기타 의문 사항은 기획처 교원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별표4]

학부(과) 정년보장 종합평가표

평가 내용

상기와 같이 _____부(과)에서는 교원 _____의
정년보장교원으로서의 임용을 (찬성/반대)합니다.

년 월 일

_____부(과) 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